

당면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1. 불법전용농지(무허가 양계장)양성화 조치

가. 현황 및 문제점

(1) 전 양계사(간이계사 포함)의 80% 이상이 불법 전용농지에 설치한 무허가건물임.

(2) 83년도에 정부의 무허가건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건물은 양성화 되었으나 부지(농지)는 아직까지 불법전용농지로 양성화되지 않은 것이 상당량 있음.

(3)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시설의 개선 또는 확장하여야 하나 기존의 시설이 무허가건물(불법전용농지)이므로 시설의 개선 또는 확장을 할 수가 없음.

(4) 근자 폐기물 관리법의 시행은 물론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폐수정화시설(계분 건조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기존의 계사가 무허가(부지는 불법 전용농지)이므로 계분건조시설의 건축허가(농지 전용허가 포함)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무허가로 계분건조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무허가라는 이유로 환경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분 건조시설 미설치로 고발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5) 양계업은 대개의 경우 그 규모가 영세하고 그 경영자는 허가 절차를 잘모르거나 농지관련법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의식, 무의식중에 생업수단의 일환으로 무허가로 축사(90% 이상이 철제 파이프 하우스식 간이축사임)를 건축하여 양계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고의적으로 범법을 한 행위는 아니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결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양계인은 한사람도 없으며, 항상 죄책감을 갖고 불안한 가운데 생업수단으로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치부성으로 한 것은 절대로 아니며 현실 여건하에서 양계업을 치부성사업으로 인정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한 실정임.

(6) 과거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양계장은 농업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히 간이 파이프하우스 계사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업수단으로 농지를 불법전용하게 되었으며 양계업은 단위당 소득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영 규모의 확장으로 소득을 증대시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전용면적(무허가축사포함)이 커졌을 뿐이지 결코 치부

성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님.

(7) 불법 농지전용 및 무허가 계사의 소유자(전 양계인의 80% 이상)는 대개의 경우 행정 당국으로부터 사직 당국에 고발되어 100만원 이상이 벌금형을 받았으나(정역형을 받은 사람도 있음) 현재에도 계속 철거(원상회복)를 강요당하고 있어 항상 불안한 가운데 생업유지를 위하여 전전공공하고 있는 실정임.

(8) 88년 11월에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농지불법 전용억제 및 대책(농지27210-2039-88. 11.22)에 의하면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민농지 01254-1210-89. 8. 19)에 의하면 농사의 개념에는 축산업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음)부득이 농지를 전용하여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는 양성화 조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양계업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므로 대호에 의거 양성화 조치(추인)를 받고자 하였으나 지방 행정당국(허가청)에서 전기(4) 내지(6)항의 사유는 고려치 않고 양계업을 치부성 사업으로 간주하고 원상복구만 강요하고 있는 실정임.

나. 건 의

(1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89년 이전에 불법 전용농지(무허가 계사 포함)는 전부 양성화 조치하여 주실 것.

(2안) 농발법에 의거 전농지를 지역별로 지정고시(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건물은 농지에서 제외(물론 지역고시에는 포함되나 필지별 지정고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89년 이전에 불법전용농지를 양성화 조치하여 주실 것.

(3안) 전기(1)-(2)안의 조치가 불가능할 시는 양계업은 현재까지 소득수준으로 보아 생업차원의 수단일뿐이지 치부성 또는 기업형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확실한 정의를 내려주시어 88년도에 농림수산부장관께서 시달한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대책에 의거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

2. 계사의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농지전용신고 면적확대 및 절차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1) 양계업은 단위당 소득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제고기 위하여는 규모를 확대하고 자동화 시설이 선결 요건이므로 계사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야 하나 농지전용허가(신고포함)및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허가청에서 규정에도 없는 주민의 동의를 첨부토록 강요하고 있어 계사의 신규설치 또는 확장 불가능한 실정임.

(2) 농어촌 특별조치법 및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가가 농지에 농업용 시설(양계장도 농업용 시설에 해당되어 양계업자도 농가에 해당됨)을 설치코자 할 때는 1,500㎡ 이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되고 그 이상의 면적을 전용코자 할 때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규모에 따른 허가청에서 농지 전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양계업은 단위당 소득이 취약하여 사유규모를 확대하여 소득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사의 면적이 많이 소요되므로 1,500㎡ 규모의 신고제는 전업양계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여(부업 규모인 10,000수의 경우도 계사 면적이 1,000㎡가 소요되므로 농지전용면적은 1,667㎡가 소요됨)불가피하게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청에서는 전업 양계업을 치부성 사업 또는 기업운운 하면서 농지 전용 허가신청의 접수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3) 계사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을 하고자 할 때 신고가 되든 허가가 되든 당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앞으로 계사 설치에 대한 농지 관리위원들의 거부로 농지전용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크게 예상됨.

나. 건 의

(1)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및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양계장 시설을 위한 농지 전용을 하고자 할 때 신고로 가름할 수 있는 면적을 3,000㎡로 상향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2) 농민(농가)이 자기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생업에 종사코자 농업용 시설인 양계장 시설을 하고자 할시는 농지관리 위원회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농지전용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3) 양계장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신고포함) 등 제반허가를 받고자 할 때 허가청에서는 법에 규정된 서류외에 주민동의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토록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조치하여 주시기 바람.(정부민원서류 처리규정 제18조 규정의 강력한 이행)

3. 도계장 증설

가.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도계장 신설억제에 따라 닭고기소비 증가에 따른 도계물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몇년간 도계장의 신설 또는 기존 도계장의 확장이 되지 않고 있어 도계시설 능력 부족으로 도계 대기 시간이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도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도계 대기중인 닭이 폐사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닭고기의 적기 공급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계장의 신설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

나. 건 의

도계장을 대폭적으로 신설하여 주시되 특히 서울 근교에 대폭 신설하여 주시기 바람.

4. 양계장 부지에 대하여 지적법상 지목을 '축산용지'로 조치

가. 현황 및 문제점

(1) 지적법상 축산시설 용지는 지목이 '목장용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용지이외의 축산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목장용지'로 조치하지 않고 잡종지 또는 대지로 조치하고 있음.

(2) 양계업의 경우 많은 면적의 건물이 소요될 뿐 아니라 부대면적이 소요되고 있는 바 전기(1)호와 같이 건물 면적외에 부대면적까지도 일률적으로 잡종지 또는 대지로 조치되고 있어 공시지가만 높아져 세부담이 증가하여 생산비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양계만 천적으로 알고 양계업을 하면서 부지를 타용도로 활용코자 하지 않는 한 지가인상이 하등의 소용이 없음)

나. 건 의

양계장 시설용지(부대용지 포함)를 지적법상의 '목장용지'로 조치하여 주시든가 지적법상 지목에 '축산용지'를 신설하여 주시어 기준 공시지가를 낮춰 줌으로써 재산세 등 세부담을 적게 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5. 축산폐수 정화(계분 발효건조)시설 표준모델 선정보급 및 농업용시설로 인정 건의

가. 현황 및 문제점

(1) 폐기물관리법상 계사 시설면적인 1,000㎡ 이상인자는 계분 건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완벽한 계분건조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양계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긴박한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이를 강력히 이행코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2)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보급되고 있는 계분 건조 처리 기계는 그 성능이 완벽하지 못하므로 설치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사용자와 시설업체간에

시비가 야기되는 등 재시공 또는 수시로 보완을 하여야 하므로 2중 3중으로 시설비가 투자되어 생산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3) 계분건조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양계업 경영중 생산되는 부산물인 계분을 건조 보관하는 시설을 양계장내에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마땅히 농업용시설로 적용받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지전용허가(100%미만 허가) 및 대체 농지 조성비 면제 등 농가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4)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입법취지도 농가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가가 일정규모 이내의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을 상대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없이 용도 증명발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를 초과하거나 절대농지일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 경우 대체농지 조성비를 면제하는 등 농가가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는데 크나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5) 그러나 본회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질의 결과에 따른 농지 27210-604(90.4.16)의 회신에 의하면 양계사는 농업용 시설에 해당되나 양계장에 별도 설치하는 계분건조시설은 농업용시설로는 볼 수 없다고 회신되어 이와 같이 같은 부지내에 같은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임에도 양계사는 농업용 시설에 해당되며 계분건조 시설은 농업용 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잘못된 유권해석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농지상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계사는 설치할 수 있으나 계분건조시설은 농업용 시설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농업용 시설이 아니므로 소요면적 100% 농지전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임) 일정 규모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도 용도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임) 설치하지 못한다면 허가를 받아 설치한 양계장을 이용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줌은 물론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어 커다란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나. 건 의

(1) 축사폐수정화(계분건조) 시설(기계포함)의 표준모델을 설정 보급하여 주시기 바람.

(2) 양계장에 설치하는 계분건조시설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업용 시설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람.

6. 부업양계 규모 상향조정

가. 현황 및 문제점

(1) 세법상 현재 10,000수 이내는 부업규모

(2)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비추어 단위당 양계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사육규모를 확장해 나가야 함.

(3) 수입개방에 대처해 나가면서 가족노동으로(5인가족 기준)전업 양계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50,000수 이상은 사육하여야 할 것임.

나. 건 의

현행 세법상 10,000수로 되어 있는 양계부업 규모를 50,000수로 상향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7. 사료의 위생검사제도 이행으로 위생적인 양계산물 생산여건 조성

가. 현황 및 문제점

(1) 사료원료 또는 배합사료의 위생검사(세균, 유해물질, 항생제 등)미시행에 따른 위생적인 양계산물 생산의 제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2) 닭에 발생하는 전염병은 대개의 경우 사료와 사료운반 차량에 의거 전파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많은 양계업자가 사료에 의한 전염병의 전파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

(3) 우리나라의 현재 제반여건(사료, 위생, 환경, 기술 등)으로 보아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한다면 사회적인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나. 건 의

(1) 사료의 품질 및 위생검사를 철저히 하여 사료로 인하여 양계산물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전염병 전파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2) 보사부 고시 '89-67호(89.12.13)에 의거 90.12.1부터 실시케 된 닭고기의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92년 이후부터 실시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8. 초생추 검역시행장 계류사의 전용면적 재조정

가. 현황 및 문제점

(1) 초생추 수입수수에 관계없이 계류사의 전용면적을 1,000㎡(1회 10,000수 수용 규모)이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1회에 10,000수 이상을 수입하는 업체도 별로 없을 뿐더러 불필요한 시설면적을 확보케 하므로 계사관리에 따른 예산낭비는 물론 면적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2) 초생추 수입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계류사에 대하여는 해당 초생추 입고전 30일 이상 기존가금류의 사육을 금지하게 된 바 시설의 유효기간이 너무 길어 기존 계사관리 및 활용에 애로가 많은 실정임.

나. 건 의

(1) 수입수수에 따라 사육가능면적을 확보, 시행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2) 계류사의 유효기간을 15일이상으로 단축하여 주시기 바람.

9. 개인축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시 세제상 혜택부여

가. 현황 및 문제점

(1)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 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축산업은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축산업도 국제경쟁에 대응키 위하여 부업 또는 전업규모를 탈피하고 기업화 하여야 할 단계이나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는 개인적인 투자보다 법인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나 법인전환시 현물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담세 관계로 법인 전환이 어려운 실정임.

나. 건 의

(1) 개인 축산업자가 사업의 확장(다수인이 공동경영) 또는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코자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법인에 출자시킨 전기 현황에 기재된 업종과 같이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2)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영농조합법인과 같이 축산업자도 축산법인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10.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가. 현황 및 문제점

(1) 사료생산업체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이라함) 제17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62조와 동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사료원료 구입시 부가세 면세품의 100분지의 5의 의제매입 인정

(2) 축산업자는 의제 매입된 원료로 생산된 배합사

료를 구입시 부가세 부담

(3) 축산물은 부가세법 제12조 동시행령 제28조 동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부가세 면세

(4) 면세품인 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배합사료)를 구입하는데 부가세부담은 모순점이 있음.

(5) 수출입 개방시대를 맞아 축산업자가 부가세를 부담함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에 대응키 곤란함.

(6)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바 배합사료는 축산물을 생산키 위한 기본적인 원자재이므로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할 주체는 축산업자가 아니고 축산물을 최종 소비하는 개체이어야 할 것이나 축산물은 면세토록 되어 있으므로 배합사료의 유통과정(사료원료구입+배합사료생산판매+배합사료구입양축(축산농가)+축산물판매+소비자(구입))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중간 도매업체라 볼 수 있는 축산업자가 부담함은 모순된 조치라 생각됨

나. 건 의

(1) 축산업자의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11. 농가가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축사 및 부대시설 포함)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면제 요청

가. 현황 및 문제점

(1) 과거(90.8.17자 농림수산부 훈령 제713호 공포 이전)에는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 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691호) 제3조 제2항 규정의 별표2에 의거 농가가 농업용 시설(허가 대상농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전액 면제토록 되었으나 90.8.17자 농림수산부 훈령 713호(농지전용 업무처

리심사 세부규정)공포에 따라 농가가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도 90.9.10부터 다음과 같이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 토록 규정하고 있음.

구 분	감면 기준
농업진흥지역안 또는 절대농지	○ 1,500㎡ 이하 전액 면제 ○ 1,500㎡ 초과시 50% 감액
농업진흥지역밖 또는 상대농지	○ 3,000㎡ 이하 전액 면제 ○ 3,000㎡ 초과시 50% 감액

* 시설을 5년이내에 확장시는 기존 전용면적을 포함.

(2) 양축농가가 수입개방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처하기 위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시설을 확장 또는 이전 신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축사의 건축이 가능한 대지 또는 잠종지를 새로이 확보키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가피하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이용하여 축사를 설치코자 하는데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됨.

(3) 축산 장기발전 계획상 생산비를 가중시키는 모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되어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한 농림수산부 장관께서 T.V에 출연하여 농어촌 발전대책을 발표함에 있어 농업용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절차를 완화하였다고 발표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과거에도 없던 제도를 훈령으로 제정하여 농가의 농업용 시설(축사 및 부대시설 포함)을 위한 농지 전용허가시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토록 한 것은 이율 배반적인 조치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양축농가를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음.

(4) 정부에서는 수입개방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점진적으로 부업양축농가를 전업농가로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부업 양축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대체농지 조성비를 면제토록 해 놓고 전업 시설 규모인 3,000㎡ 이상은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토록 조치(생계유지 차원으로도 현재 실

정으로 보아 10,000㎡ 는 되어야 함)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전업 양축농가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5) 우루과이라운드와 별 관계가 없는 양어장, 양만장 시설 등을 위한 전용 허가시는 93.12.31까지 대체농지 조성비를 전액 면제해 주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다면 즉각적인 피해를 당하여야 하는 양축시설을 위한 농지 전용시는 대체 농지 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음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생각하며 더구나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만 시설을 5년 이내에 확장시는 기존의 전용시설 면적까지 포함하여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됨.

나. 건 의

농가가 농업용시설(축사 및 부대시설 포함)설치를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대체농지 조성비 전액을 면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람.

12. 축산정책에 대한 건의

가.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의 축산업은 지난날 공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낙후된 산업으로 전락되어 이제는 농촌의 중요한 소득 산업으로서, 효율적인 국토관리 산업으로서, 국민의 영양 개선을 위한 고급 식품 생산업으로서의 기능과 그 산업 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음.

(2) 이미 정부는 주요 축산물의 수입을 개방함으로써 축산농민들의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있고, 축산농민들은 축산업의 존립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축산업에 대한 의지의 결여는 정부 정책에 대한 많은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다. 더욱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으로 정부는 농축산물의 전면 수입 개방을 피할 수 없으리라고 전망됨에 따라 한국의 축산학자와 축산농민은 큰 위기의식을 느끼

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축산학과 축산업계는 최근에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축산장기발전대책을 지지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뜻을 함께하여 정부각계에 건의 드리오니 지난 반세기 동안 피땀흘려 정부와 축산인과 국민이 함께 이룩한 한국의 축산기반을 공고히 하고 더욱 발전한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 주셔서 모든 축산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나. 건 의

(1) 축산업은 농촌의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산업이고 아울러 국토의 생산성을 유지 발전시키며 국민의 식품을 생산하는 전략 산업으로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발전의지를 확고히 천명해 주시기 바람.

(2) 모든 축산인은 한국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축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람.

(3) 축산물의 수출입을 포함한 수급관리 및 기술개발 업무를 축산단체에 대폭 이양함으로써 축산업의 자주적 발전 노력을 정부는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 육성해 주시기 바람이며 축산정책 결정 과정에 축산 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주시기 바람.

(4)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재정지원이 어려워질 전망이므로 각종의 세제를 합리적으로 감소·개선 하므로써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축산업 및 축산관련산업에 대한 영세율적용은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5) 축산물가공업은 비롯한 모든 농축수산물가공업의 인허가업무는 모든 농축수산물의 수급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부에 환원시키고 보건사회부는 본연의 업무인 식품산업의 위생관리에 전념하도록 해야됨.

(6) 축산 농민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및 가공에

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축산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며 따라서 축산농민단체가 축산물유통 및 가공산업에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모순된 제도개선 및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양계산물 가격 안정대 설치요망

가. 현황 및 문제점

(1) 전국의 육계인은 그동안 크고 작은 가격파동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인내심과 긍지를 갖고 국민의 제2식량이자 건강식품인 닭고기를 생산 공급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또한 국제화시대에 육계인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 육계인 스스로가 해결해 보고자 몸부림치고 있음.

(2) 그러나 우리나라의 육계산업은 아직까지도 그 규모가 영세하고 유통 구조마저 전근대적이므로 수집상의 횡포로 정상거래가 어려운 실정일뿐 아니라 계절에 따른 소비의 불균형으로 가격의 등락이 심하며 생산기간이 짧아 불황이 오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가격이 폭등하고, 호황이면 생산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가격이 폭락하는 등 수급조절에 의한 가격안정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임.

나. 건 의

닭고기(계란포함)에 대한 가격안정대를 설치하여 수매비축을 제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닭질병예찰(계군혈청검사)사업비 지원

15. 기 타

가. 닭의 전염병 발생 신고의 이행으로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살처분 보상제도를 시행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닭의 계열화 사업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계열주체가 기업중심으로 되어 기존생산자를 제외하고 신규 농가와 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과잉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니 기존의 생산자를 중심으로한 생산자 계열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이에 대한 자금지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업에 대한 정책자료의 지원이 빈약한바 중소기업과 같이 시설자금 등 축산자금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謹賀新年

